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2023. . .
제출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을 변경해야 할 경우 반드시 집행기관에서 직접 시행하기 위해 문구 일부를 수정함.

2. 수정 주요내용

- 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함.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을 변경해야 할 경우 반드시 집행기관에서 직접 시행하기 위해 문구 일부를 수정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8조(재산의 관리) ① (생 략) ② <u>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체육센터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u> ③ (생 략)	제8조(재산의 관리) ① (원안과 같음) <u><삭 제></u> ② (원안 제3항과 같음)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구미시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13세 미만인 자와 초등학교 학생을 말함.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함.
3. “군인”이란 정복을 착용한 병장 이하의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을 말함.
4. “성인”이란 어린이·청소년·군인·노인을 제외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함.
5. “노인”이란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신분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6. “단체”란 30명 이상이 인솔자에 따라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함.

제3조(명칭 및 위치)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구미시 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업) 체육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생활체육 보급 및 시민 체력향상
2. 지역사회 생활체육 육성

3. 건전한 여가선용 및 프로그램개발 보급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은 구미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시장은 전문적 관리와 운영·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체육관련 비영리 단체나 구미시설공단(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의5에 의거하여 수탁관리자의 관리 및 운영 능력, 수행실적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 이내로 한다.

④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체육센터의 재산과 시설(이하 “재산”이라 한다)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 시장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수탁관리자의 의무) ① 수탁관리자는 지역사회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다양

한 시민정서 함양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의 장, 문화체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체육센터의 사용이 특정 단체 또는 특정인에게 편중되지 않고 다수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체육센터안의 세부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재산의 관리) ① 수탁관리자는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받은 재산을 체육센터 운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재산의 신규 취득 및 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회계 및 운영)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회계는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 결과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때는 시설의 감가상각비 등으로 별도 적립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 ① 시장은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시행하며 필요시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운영의 해제)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탁운영을 해제할 수 있다.

1.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
2. 체육센터의 사업목적에 위반된 운영을 하였을 때
3. 위탁관리 운영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12조(사용허가) 체육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때에는 수탁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및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 및 허가시간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제3자에게 사용권을 양도 및 양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그 밖에 체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할 경우 1회 위반 시 7일, 2회는 15일, 3회 이상은 30일간 사용자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기간은 위반일로

부터 가산하고 누적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을 가진 사람
2. 음주, 흡연, 질서 문란 등으로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폭력·위협행위로 위험을 주거나 흉기 등 안전에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고성, 소란행위 등 다른 사용자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체육센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그 밖에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제1항 및 제3항의 처분으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제한, 입장을 거절 또는 퇴장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시는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료의 징수)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체육센터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1조에 따라 사용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하며 사용료는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관리자가 사용자들로부터 징수하는 체육센터의 사용료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징수된 사용료는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미사용한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체육센터 시설보수 등으로 인한 자체 사정에 따라 시설사용이 불가능하여
사용이 취소된 때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자의 입원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과 총 사용료의 10퍼
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
까지 사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총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
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개
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 사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3. 제1항제3호의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 사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제16조(사용료의 감면) **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사용
료 일부를 감경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 3과 같다.

제17조(예산 및 결산) ① 체육센터를 운영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매 회
계연도 개시 전에 체육센터의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자는 체육센터의 운영사항을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센터의 명칭과 위치(제3조 관련)

연번	명 칭	위 치	비고
1	들성생활체육센터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78 (들성생태공원 내)	
2	강동국민체육센터	구미시 인의동 1022 (인동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	
3	도봉국민체육센터	구미시 도량동 92	

[별표 2]

구미시 체육센터 사용료(제12조 관련)

1. 들성생활체육센터

• 대인 사용료

(단위:원)

구 분	기 준	대 상	구미시 관내	구미시 관외
수영	3시간	성인	3,500	5,000
		청소년, 군인	3,000	4,500
		어린이, 노인	2,500	4,000
	단체(3시간)	성인	3,000	4,000
		청소년, 군인	2,500	4,000
		어린이, 노인	2,000	3,500
	자유(월)	성인	60,000	70,000
		청소년, 군인	50,000	60,000
		어린이, 노인	42,000	52,000
아쿠아로빅	자유(월)	성인	60,000	70,000
		청소년, 군인	50,000	60,000
		어린이, 노인	42,000	52,000
체력단련실	1회	성인	3,000	4,000
		청소년, 군인	2,500	3,500
		어린이, 노인	2,000	2,500
	자유(월)	성인	42,000	50,000
		청소년, 군인	36,000	45,000
		어린이, 노인	24,000	40,000
요가 필라테스	강습(월)	성인	36,000	42,000
		청소년, 군인	30,000	35,000
		어린이, 노인	26,000	30,000

배드민턴	2시간	성인	3,000	4,000
		청소년, 군인	2,500	3,500
		어린이, 노인	2,000	3,000
	자유(월)	성인	36,000	42,000
		청소년, 군인	30,000	35,000
		어린이, 노인	26,000	30,000
농구	2시간	성인	2,500	3,500
		청소년, 군인	2,100	3,100
		어린이, 노인	1,800	2,800
배구	2시간	성인	2,500	3,500
		청소년, 군인	2,100	3,100
		어린이, 노인	1,800	2,800

※ “월회원”이란 1개월 회원권을 소지한 회원을 말한다.

※ 위 종목 외 체육센터에서 주관하는 체육 프로그램의 사용료는 상기 유사 종목의 요금을 감안하여 별도 산정한다.

• 다목적체육관 전용료

(단위:원)

구 분	사용 목적	평 일	비 고
다목적 체육관	체육 행사	100,000	- 토, 일, 공휴일은 평일 사용료의 20% 가산한다. - 야간사용은 주간 사용료의 20% 가산한다.
	체육 행사 외	150,000	

※ 주간사용은 09:00 ~ 18:00 운영 시간 중 “4시간 이내” 사용

※ 야간사용은 18:00 이후

※ 주간사용 4시간 초과 사용 시 시간당 기본사용료의 25% 가산한다.

(1시간 미만 초과분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원)

시 설 명	단 위	사용료(원)	비 고
무대조명	4시간 사용	40,000	4시간 초과 사용 시 시간당 기본사용료의 25%를 가산한다. (1시간 미만 초과분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냉·난방기		40,000	

2. 강동국민체육센터

• 대인 사용료

(단위:원)

구 분	기 준	대 상	구미시 관내	구미시 관외
수 영	3시간	성인	3,500	5,000
		청소년, 군인	3,000	4,500
		어린이, 노인	2,500	4,000
	단체(3시간)	성인	3,000	4,000
		청소년, 군인	2,500	4,000
		어린이, 노인	2,000	3,500
	자유(월)	성인	60,000	70,000
		청소년, 군인	50,000	60,000
		어린이, 노인	42,000	52,000
아쿠아로빅	자유(월)	성인	60,000	70,000
		청소년, 군인	50,000	60,000
		어린이, 노인	42,000	52,000
체력단련실	1회	성인	3,000	4,000
		청소년, 군인	2,500	3,500
		어린이, 노인	2,000	2,500
	자유(월)	성인	42,000	50,000
		청소년, 군인	36,000	45,000
		어린이, 노인	24,000	40,000
요 가 필 라 테 스	강습(월)	성인	36,000	42,000
		청소년, 군인	30,000	35,000
		어린이, 노인	26,000	30,000

※ “월회원”이란 1개월 회원권을 소지한 회원을 말한다.

※ 위 종목 외 체육센터에서 주관하는 체육 프로그램의 사용료는 상기 유사 종목의 요금을 감안하여 별도 산정한다.

3. 도봉국민체육센터

• 대인 사용료

(단위:원)

구 분	회 원	대 상	구미시 관내	구미시 관외
스쿼시장	1시간	성 인	5,000	7,000
		청소년, 군인	4,000	6,000
		어린이, 노인	3,500	5,500
	월(자유)	성 인	60,000	70,000
		청소년, 군인	50,000	60,000
		어린이, 노인	45,000	55,000
	월(강습)	성 인	70,000	80,000
		청소년, 군인	60,000	70,000
		어린이, 노인	55,000	65,000
다목적 체육관 (배구장)	2시간	성 인	2,500	3,500
		청소년, 군인	2,100	3,100
		어린이, 노인	1,800	1,800
	월회원(자유)	성 인	36,000	42,000
		청소년, 군인	30,000	40,000
		어린이, 노인	26,000	36,000

※ “월회원”이란 1개월 회원권을 소지한 회원을 말한다.

• 전용 사용료

(단위:원)

구 분	사용 목적	평 일	비 고
다목적 체육관	체육 행사	60,000	- 토, 일, 공휴일은 평일 사용료의 20% 가산한다. - 야간사용은 주간 사용료의 20% 가산한다.
	체육 행사 외	90,000	
스쿼시장(1면당)		25,000	

※ 주간사용은 09:00 ~ 18:00 운영 시간 중 “4시간 이내” 사용

※ 야간사용은 18:00 이후

※ 주간사용 4시간 초과 사용 때 시간당 기본사용료의 25% 가산한다.(1시간 미만 초과분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원)

시 설 명	단 위	사용료(원)	비 고
냉·난방기	4시간	40,000	4시간 초과 사용 시 시간당 기본사용료의 25%를 가산한다. (1시간 미만 초과분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별표 3]

사용료 감면 요율(제12조의3관련)

구분	관 련 근 거	요 율	비고
면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면 제	
감면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80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만 65세 이상의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국군포로송환법」 제6조 및 제15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100분의 50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의 경우 활동보조자 1명을 포함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수영장 월 회원 중 만 10세부터 만 55세까지의 여성(가임기 여성)	100분의 10	

- ※ 감면율은 월회원에 적용한다.
-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 적용한다.